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46호 2022. 6. 24(금)

고 시

- 남원시고시 제2022-83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지하이어 조성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22-1400호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5
- 남원시공고 제2022-1406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4
- 남원시공고 제2022-14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18
- 남원시공고 제2022-141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2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83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6월 2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12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기정 9,532㎡ → **변경 9,6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기정)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대표 이용운
(변경)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대표 현경식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8-13(어현동)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사업인가일부터 ~ 2022년 4월 30일
 - **(변경) 사업인가일부터 ~ 2022년 7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 모노레일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99,700	9,001	74	9,077						
1	노암동	1	전	813	4	9	13	남원시					
2	노암동	2-3	전	821	2	-	2	남원시					
3	노암동	3	전	8,666	51	-	51	남원시					
4	노암동	10	답	11,356	1	-	1	남원시					
5	노암동	419	전	212	22	-	22	남원시					
6	노암동	421-1	답	1,933	5	-	5	남원시					
7	노암동	421-2	답	1,983	305	-257	48	남원시					
8	노암동	421-3	답	455	-	65	65	남원시					
9	노암동	421-4	답	167	-	167	167	남원시					
10	노암동	421-6	답	25	-	25	25	남원시					
11	노암동	422-1	답	6,617	579	-543	36	남원시					
12	노암동	422-3	답	540		540	540	남원시					
13	노암동	433	전	50	29	15	14	남원시					
14	노암동	433-1	전	1,596	-	15	15	남원시					
15	노암동	438	전	793	57	-	57	남원시					
16	노암동	810-10	구	969	29	-	29	국 (건설부)					
17	노암동	810-15	구	764	502	224	278	국 (건설부)					
18	노암동	810-31	구	472		154	154	국 (건설부)					
19	노암동	810-32	대	126		58	58	국 (기재부)					
20	노암동	810-33	대	2,428		9	9	국 (기재부)					
21	노암동	828	도	126	2	-	2	국 (건설부)					
22	노암동	829	구	1,184	3	-	3	국 (농축산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어현동	37-12	원	17,017	1,446	56	1,502	남원시					
25	어현동	37-20	원	685	203	-	203	남원시					
26	어현동	37-21	원	1,055	82	-	82	남원시					
27	어현동	37-74	원	3,054	128	-	128	남원시					
28	어현동	37-79	원	1,881	228	-	228	남원시					
29	어현동	37-99	원	267,512	71	-	71	남원시					
30	어현동	37-111	도	20,099	78	-	78	남원시					
31	어현동	37-153	원	49	33	-	33	남원시					
32	어현동	37-158	원	8,169	491	-	491	남원시					
33	어현동	37-176	원	220	-	-	-	남원시					
34	어현동	37-177	원	132	-	-	-	남원시					
35	어현동	37-178	원	63,622	1,297	-	1,297	남원시					
36	어현동	37-187	원	836	82	-	82	남원시					
37	어현동	37-190	원	283	1	-	1	남원시					
38	어현동	산88-2	임	2,123	979	511	1,490	남원시					
39	어현동	산88-3	도	918	52	-	52	남원시					
40	어현동	산88-5	도	874	9	-	9	남원시					

○ **짚와이어(유원지 내)**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9,063	531	-	531						
1	노암동	1	전	813	302	-	302	남원시					
2	노암동	422-1	답	7,157	102	-	102	남원시					
3	노암동	산10	임	21,093	127	-	127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2-1400호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 제정이유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청원심의회 의 원칙 및 구성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 제6조)
- 라. 청원심의회 의 기능, 개최, 운영사항 규정 (안 제7조~제9조)
- 마. 비밀 준수 의무,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 (안 제10조~제12조)

3. 행정예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1.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감사실장

1. 제정이유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청원심의회의 원칙 및 구성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 제6조)
- 라. 청원심의회의 기능, 개최, 운영사항 규정 (안 제7조~제9조)
- 마. 비밀 준수 의무,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 (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행정예고
 - 기간: 2022. 6. 20. ~ 7. 11. (21일간)
 - 결과:

남원시 훈령 제 호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사항”이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청원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남원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직속 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령에 따라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내부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및 제47조(예고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1406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남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987	-	35,987	100.0	
계획관리지역	35,987	감)121	35,866	99.7	
보전관리지역	-	증)121	121	0.3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증감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지구단위계획구역(아스콘)	이백면 강기리 150-1번지 일원	35,987	-	35,987	협의의제 지계 58000-2044 (1998.7.18)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변경은 없으며 기 운영 중인 공장에 맞춰 선형 변경코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13	지구단위계획구역(아스콘)	· 구역변경	·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장계획 수립을 통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간시설(녹지)(비도시계획시설) :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경관녹지	이백면 강기리 146-2번지 일원	2,078	-	2,07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A = 2,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과 사업부지의 차폐성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을 위한 경관녹지 설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987	-	이백면 강기리 150-1번지 일원	35,987	-	35,987	
1BL	35,987	1-1	이백면 강기리 150-1번지 일원	35,987	감)2,078	33,909	공업용지
		1-2	이백면 강기리 146-2번지 일원	-	증)2,078	2,078	녹지용지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987㎡ → 33,909㎡ (감 2,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용지 확보에 따른 공업용지 감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A = 2,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과 사업부지의 상충성을 완화하고 대기오염,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용지 신규 설치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BL	1-1	1-1 1-2	용도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중 C10~C15, C19~C20, C22, C24~C25, C29~C31, C33~C34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배치		
			형 태	· 기능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 ·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		

3. 공람 기간 : 신문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4.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서

과업명	남원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150-1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고 제2022 - 14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6월 2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13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 정 조 서		개 설(구성) 계 획			시 행 구 간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중로3-33	13~18	363	13~18	363	5,426	신정동 95번지 ~ 신정동 155-9번지	폭원확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23년 10월 05일

5. 사 업 비 : 839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7.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9.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9,009	5,426					
1	95	전	169	15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96-2	전	84	8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97-1	전	778	77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98-1	전	33	33	양경호 양순란 양승호 양양임 양완식 양춘호 양혜순 이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2길 32,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에이동 3403호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29번길 18, 403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문안길 17 전라북도 남원시 칠승리길 74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2길 65, 비0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0길 20-6 전라북도 남원시 칠승리길 74			
5	101-1	전	311	31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2	전	1,111	6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106-1	전	166	16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106-2	전	650	2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113-2	답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113-4	답	8	8	(주)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11	116-18	임야	334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116-20	임야	115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116-29	임야	87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	116-57	임야	2,559	6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5	116-138	전	2,065	79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6	116-139	임야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116-140	임야	3,355	5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	116-142	임야	2,577	3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	116-143	전	298	29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0	116-145	전	362	19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	116-152	전	109	2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	116-153	전	2,887	6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	116-159	전	83	1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	155-6	답	390	3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	155-8	답	118	118	박성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10, 102동 1203호			
26	155-9	도로	75	75	김재권	남원 주천면 용궁리			
27	155-11	도로	9	9	국(건설부)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8	155-16	도로	1	1	국 건설부				
29	155-17	답	37	37	박성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10, 102동 1203호			
30	155-18	도로	16	16	김재권	남원 주천면 용궁리			사정 토지
31	795-15	구거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32	797-6	도로	60	60	국(건설부)				
33	797-9	도로	4	4	국 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사

- 지장물 없음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416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박종백	생년월일(등록번호) 520521-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73-2 주1 1층 벽돌/기와 주택 44.33㎡ 주1 1층 브록/스레트 주택 19.74㎡ 부1 1층 브록/스레트 창고 19.07㎡ 부2 1층 브록/스레트 창고 16.6㎡ 부3 1층 브록/스레트 축사 8.93㎡ 부4 1층 브록/스레트 창고 8.73㎡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2년 6월 24일 ~ 2022년 8월 23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박돈규	생년월일(등록번호) 280610-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일

남 원 시 장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416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방극종	생년월일(등록번호) 701101-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872-1 주1 1층 목조 주택 49.55㎡ 부1 1층 목조/기와 창고 20.26㎡ 부2 1층 목조/기와 축사 16.1㎡	
	취득사유 상속, 증여	
	공고기간 2022년 6월 24일 ~ 2022년 8월 23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방진수	생년월일(등록번호) 020506-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일

남 원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416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임옥자	생년월일(등록번호) 420707-2*****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636-17 주1 1층 목조 주택 98.5㎡	
	취득사유 상속	
	공고기간 2022년 6월 24일 ~ 2022년 8월 23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단자	생년월일(등록번호) 140805-2*****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일

남 원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